직제규정

```
전문개정 2007.08.30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17.06.22
     정
        2007.11.22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17.12.28
개
     정 2007.12.27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18.06.21
        2008.12.29
개
     정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18.12.20
개
                    개
    정 2009.01.29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19.04.18
개
    정 2010.01.27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19.12.27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20.04.27
개
     정 2010.12.31
                    개
개
    정 2011.01.28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20.06.25
개
     정 2011.12.28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20.12.24
개
     정 2012.12.31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21.06.24
개
    정 2013.11.29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21.12.24
개
     정 2014.12.23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22.06.23
개
     정 2015.04.30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22.12.29
개
    정 2015.11.26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23.06.23
개
    정 2016.06.28
                    개
                         정 2023.12.28
개
     정 2016.12.21
       [전략기획처 미래전략부 042-600-8148]
```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조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공사의 직제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 2 장 구성원

제3조(구성원) 공사에는 이사, 감사 및 직원을 둔다.

제4조(이사 및 감사)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상임이사는 사장, 본부장으로 구분한다. 다만,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가 아닌 본부장을 둘 수 있다.<개정 2021.12.24>

-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경영을 총괄한다.
- ③ 본부장은 공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장을 보좌하고 담당업무를 총괄하며 사장 유고 시 그 직무 를 대행한다. 단 사장 유고시에는 사장이 미리 지명한 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사장이 미리 지명한 직무대행 본부장이 없을 경우에는 경영전략본부장, 정비사업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09.01.29, 2010.01.27, 2011.12.28, 2018.06.21, 2021.06.24>
- ④ 감사는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
- **제5조(직원)** ① 직원은 일반직원, 별정직원, 특정직원, 전문직원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16.06.28, 2020.04.27, 2022.06.23>
 - ② 일반직원, 별정직원, 특정직원의 직군, 직렬 등에 관하여는 직무관리시행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06.23>
 - ③ 일반직원의 직급은 1급, 2급, 3급, 4급, 5급, 6급, 7급으로 한다.<개정 2007.11.22, 2015.04.30>
 - ④ 일반직원의 등급 및 호칭은 직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07.11.22>
 - ⑤ 공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정직원과 특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, 별정직원과 특정직원의 운영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개정 2020.04.27, 2022.06.23>
 - ⑥ 전문직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으로 운영하며, 전문직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개정 2016.06.28.>

제 3 장 조 직

- 제6조(조직) 공사의 조직 및 지휘체계는 별표 1과 같다.
- 제7조(위원회) 특정업무에 관한 심의조정 또는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8조(임시조직) 한시적인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시조직을 둘 수 있다.
- 제9조(하부조직) 제6조에 따른 하부조직은 직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제 4 장 정원 및 직위, 직급 등

- 제10조(정원)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다만, 사장은 필요한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4급 이하의 일반직과 별정직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부서별 정원은 직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 - ③ 임금피크 대상 직원은 정년퇴직 예정일의 2년 전부터 제1항의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며, 별도정원은 별도직군 및 초임직급 정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.<개정 2016.06.28, 2021.12.24>
- 제11조(직위별 직급 및 직무) ① 일반직원의 직위별 보직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사장은 필요한 경우 각 직위의 직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직원의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직무관리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- 제12조(분장업무) 공사의 부서별 세부 분장업무는 직제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직무수행) ① 임원과 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.
 - ② 사장 및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본부장 및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그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으로 정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14조(위임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. 1	7710	2005		부	칙
이	규정은	2007년	9월 1일부터 시행한다.		
이	규정은	2007년	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07년	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08년	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09년	2월 6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10년	2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11년	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11년	2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12년	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13년	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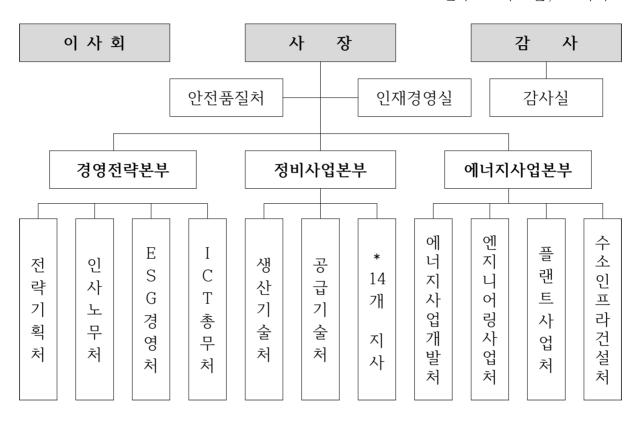
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	부	칙
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•	•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즥
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	부	칙

이	규정은	2020년	5월	1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20년	7월	1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21년	1월	1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21년	7월	1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22년	1월	1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						부	칙
제	2조(경교 ② 본 구	·조치) ①) 특 ⁷ 이전	정직원의]의 지원 ²		정직된	행한다. 관리요령의 시행일인 2022년 3월 29일로 한다. 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완료시까지 지원
이	규정은	2023년	1월	1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23년	7월	1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이	규정은	2024년	1월	1일부터	시행한다.	부	칙

【**增班 1**】<개정 2008.12.29, 2009.01.29, 2011.01.28, 2011.12.28, 2012.12.31, 2013.11.29, 2014.12.23, 2015.11.26, 2016.12.21, 2017.06.22, 2018.06.21, 2018.12.20, 2019.04.18, 2019.12.27, 2020.06.25, 2021.06.24, 2021.12.24, 2022.12.29, 2023.06.23>

조 직 도

3본부 11처 2실, 14지사



* [14개 지사]

	평 택 기 지 지	인 천 기 지	통 영 기 지 지	삼 착 기 지	제 주 L N G	서 울 지 사	인 천 지 사	경 기 지 사	강 원 지 사	대 전 충 청 지	전 북 지 사	광 주 전 남 지	대구경북지	부 산 경 남 지
사 사 사 사 사 사	'		'		지	사	사	사	사	'	사	지 사	'	지 사

정 원 표

(단위: 명)

3	구 분	정 원	
	임 원	4	
	1 급	21	
	2 급	76	
일반직	3 급	180	
	4~7급	1,443	
	소 계	1,720	
1	별정직	65	
Ĩ	특정직	461	
7	합 계	2,250	

【별표 3】<개정 2009.01.29, 2010.12.31, 2011.12.28, 2014.12.23, 2015.04.30, 2015.11.26, 2018.06.21, 2019.12.27, 2021.06.24, 2021.12.24, 2022.12.29>

직위별 보직 기준

직 위	직 급
본부장(이사 제외)	1급
처장, 실장, 지사장	1~3급
부장, 센터장, 사업소장, 연구원장	1~4급
팀장	1~4급
분소장, 파트장, 해외지사장, 연구소장	1~5급
직원	1~7급